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2498호  
정 리 / 홍 보 과

● 대통령령 제13,963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황인성  
상공자원부 장관 김철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종류)**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4.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제 3 조(공장입지금지대상지역)**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이하 “공장입지금지

지역”이라 한다)으로 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인 지역 또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지역 또는 구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구역을 공장입지금지지역에서 제외한다.

**제 4 조(공장입지금지지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장입지금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장입지금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장입지금지지역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를 위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현재 관할구역안에 공장입지금지지역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현황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공장입지금지지역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기준)**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

비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지역을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1. 면적은 5만제곱미터이상일 것
2. 동력·용수·진입도로등의 지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3.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녹지대등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공장의 집단화로 입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아닐 것

**제 6 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절차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영림서장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설립유도지역의 후보지역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역이 2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사업계획승인관련처리기준등의 조정)** ① 법 제8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유지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 9 조(국유재산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당해 국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인 때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국유토지인 때
  - 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하
  - 나.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하
  - 다.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제곱미터이하

**제 10 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또는 개발유보권역안에 공장을 보유한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공장증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 기존공장건축물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00세제곱미터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일 것
2.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11 조(안전관리자들의 추가채용)** ① 법 제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장 또는 제조소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것으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하는 사업장

2.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장 또는 제조소중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이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2인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 12 조(안전관리자들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4항 및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3.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②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는 소방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이동판매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로 한다.

**제 13 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중 액화가스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월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②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중 액화가스저장능력 2천킬로그램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소방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취급업중 전기도금용 또는 금속열처리용으로 무기시안화합물을 사용하거나 특정유독물을 사용하는 유독물취급업

**제14조(환경관리인의 공동임명)** ① 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종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번호가 4단위까지 같은 업종을 말한다)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등(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3종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4종사업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4종 및 5종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만, 1일 10세제곱미터이하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등이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오염분야별로 환경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명된 환경관리인 1인이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동으로 환경관리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환경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집단화된 공장지역)** 법 제28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화된 공장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이 설치된 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이 설치된 지역

**제16조(기준에너지사용량)** 법 제29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라 함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 3천석유환산톤을 말한다.

**제17조(수출승인의 의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 및 거래형태”라 함은 수출규모가 미화 2만달러이하이고,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가능한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을 말한다.

**제18조(압력용기의 검사대상)**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비점을 넘는 액체

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압력용기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방법등)**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2개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는 해당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각각의 해당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7일 이상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명기하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법령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을 경과한 때에도 해당법령에 의하여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 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해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기업에로신고센터의 설치)**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로신고센터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상공회의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둔다.

**제21조(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방법)**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업에로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히 처리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를 행한 행정기관명
3. 기업에로 내용
4. 기타 기업에로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위원회 회의의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의 지급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조사등)** ① 위원회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내용의 요약, 당사자등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9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요구는 행정규제내용의 요약, 제출 일시 및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규제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제26조(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호의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재 무 부
2. 농림수산부
3. 상공자원부
4. 건 설 부
5. 보건사회부
6. 노 동 부
7. 환 경 처
8. 기타 당해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공장입지금지대상지역(제3조관련)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도로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5.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과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7.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용항공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구역
8.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10.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1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 및 수산자원보전지역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1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